



제목: 비용청구 및 추심

1.BR.40

효력 발생일: 2016년 1월 1일; 개정: 10월 19일

정책: UnityPoint Health("UPH")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Iowa Health System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환자에게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모든 환자는 자신의 의료비 일부를 지불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UPH 병원은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 기한이 된 금액을 환자로부터 추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범위: 내국세법 501(c)(3)의 세금 면제 대상이고 부록 A에 기재된 UPH 병원 시설과 병원 조직("UPH 병원"으로 통칭함).

원칙: 자신의 의료비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환자는 이용 가능한 보험 보장을 모색하고 의료 서비스 대가의 일부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UPH 병원은 이러한 환자에게서 지급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를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 미수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1. 정의.

- 1.1. 환자. 환자 및/또는 환자의 책임있는 당사자(부모, 후견인, 보증인)를 포함합니다.
- 1.2. 응급 의료. 응급 환자 치료 및 분만법("EMTALA")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그 자체로써 충분히 심각한 정도의 급성 증상을 보이는 까닭에,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없으면 환자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는 신체 장기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출산 시 자궁이 수축되고 있는 임산부가 포함됩니다.
- 1.3.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원을 대신하여, 환자에게서 본 정책에 따라 만기가 된 금액을 추심하는 독립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 1.4. 용자 지원. UPH 준수 정책 1.BR.34, 용자 지원 - 병원 시설 또는 UPH 정책 1.BR.34M, Meriter 병원 용자 지원에 의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방법.

- 1.5. FINA-적격 환자. 본 정책에서 설명된 절차를 따르고 UPH 정책 1.BR.34, 용자 지원 - 병원 시설 또는 UPH 정책 1.BR.34M, Meriter 병원 용자 지원에 의거, 용자 지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환자.
- 1.6.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1) 환자 상태의 진단 및 치료에 부합하고; (2) 우수 의료행위 기준에 따라; (3)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환자, 환자의 담당 의사 또는 간병인의 편의가 아닌 다른 이유를 위하여 필요하며; 그리고 (4)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가장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
- 1.7. 과도한 이자. 연방 단기 이자율에 그 당시에 유효한 3% 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 1.8. 특별 추심 조치("EC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련되고 치료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환자를 상대로 병원에 의하여 또는 병원을 대신하여 취해지는 조치:
 - 1.8.1.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과거의 미납 비용에 대하여 지불을 연기, 거부, 또는 요구.
 - 1.8.1.1.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은 응급의료의 제공을 방해하는 채권 추심활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 1.8.2. 법적 또는 사법 절차에 참여(그 예로써 민사소송 개시, 유치권 설정, 부동산 압류, 임금 차압이 포함됩니다).
 - 1.8.2.1. 그러나, 이 정책은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산업재해보상 등 1차 또는 제 3자 지급자에 의하여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수 있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사고 또는 부상을 당한 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나타나는 경우, 아이오와, 일리노이 및 위스콘신 주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와 같이, 병원은 제 3자 합의금에 대하여 병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고 당해 유치권은 ECA가 아닙니다.
 - 1.8.3. 파산 절차에서 청구의 제기는 ECA가 아닙니다.
- 1.9. 쉬운 말 요약. UPH 정책 1.BR.34, 용자 지원 - 병원시설 또는 UPH 정책 1.BR.34M, Meriter 병원 용자 지원을 요약하는 문서.

- 1.10. 퇴원 후 청구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병원을 떠난 후 환자에게 제공된 청구서.
- 1.11. 신청 기간.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일에 시작해서, (1) 최초의 퇴원 후 청구서 제공 후 240 일; (2) 본 정책의 섹션 2.2.1.1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제공된 통지에 표시된 기한, 또는 (3) 추가 정보 제공 기한이 경과된 때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종료되는 기간.

2. 청구 및 추심 지침.

- 2.1. 병원은 자신의 치료비 지불을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하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지불 기한이 된 금액을 환자가 지불할 것을 기대하며, 필요한 경우 추심을 진행합니다.
- 2.2. 병원은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환자에게 용자 지원의 가용성과 용자 지원의 신청 절차를 알게 할 때까지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환자를 상대로 특별 추심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2.1. 합리적인 노력에는 병원이 취하는 다음의 모든 조치가 포함됩니다:

2.2.1.1. 용자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서면 통지 제공(및 구두 통지 제공 시도); 필요한 경우 병원이 취할 수 있는 ECA 를 명시하는, 쉬운 말 요약의 제공; 그리고 그 이후에 ECA 가 개시되고 서면 통지가 제공된 날의 30 일보다 빠르지 않은 마감 기한 명시.

2.2.1.2. 불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환자에게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통지하고, 환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 병원은 서면으로 이러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2.2.1.3. 환자가 신청기간 중 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용자 지원 적격에 대하여 결정.

2.2.2. 병원이 이전 치료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을 이유로 치료를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합리적인 노력 요건은 달라집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용자 지원 신청서와 용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서면통지를 제공하고, 이전 치료에 대한 용자 지원 신청서 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서면 통지가 제공되는 날의

30 일 후 또는 이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한 최초 퇴원 후 청구일 후 240 일 중에서 늦은 날짜보다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대 안에 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병원은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2.2.3. 병원이 환자의 용자 지원 적격성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제 3 의 기관이 생성한 정보를 사용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환자가 용자 지원 정책에 의한 무료 치료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환자는 제 3 자의 결정을 통지 받아야 하고 추가적인 용자 지원 신청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 2.3. 병원은 주 또는 연방 규정에 따라 이러한 추심 활동에서 면제된 환자의 자산에서 추심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 2.4. 환자가 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병원이 환자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가 Medicaid 를 신청하고 이러한 Medicaid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용자 지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2.5. 환자의 용자 지원 적격성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병원은 환자의 최초 퇴원 후 청구서 날짜로부터 120 일에, 본 정책의 섹션 2.2.1.1 에서 기술된 통지에서 환자에게 제공된 추가 기한을 더한 날까지, 특별 추심 조치를 개시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 2.5.1. 환자가 신청 기간 내에 언제든지 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은 ECA 를 중지하고, 환자의 용자 지원 적격성을 결정한 후, 환자에게 용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2.5.1.1. 환자가 용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무료 치료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표시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5.1.2. 환자가 용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병원은 이전에 취해진 모든 ECA 를 취소하고 환자에게 빚진 초과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 2.5.2. 환자가 신청 기간 내에 불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가 용자 지원 신청서를 완성하고 병원이 환자의

용자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또는 환자가 최초의 퇴원 후 청구서 날짜로부터 최고 240 일, 본 정책의 섹션 2.1.1.1 에서 기술된 통지에서 환자에게 제공된 기한, 그리고 전체 용자 지원에 대한 비적격성의 추정적 결정에 대한 응답 기한까지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때까지, 모든 ECA 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2.5.3. 환자가 환자의 최초 퇴원 후 청구서 날짜로부터 240 일 동안 완전한 용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통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ECA 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6. 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 받은 환자의 경우, 병원은 동시에 본 정책상의 통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이 여러 번의 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미지불 치료비용을 집계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치료기간에 대한 신청기간이 지날 때까지 ECA 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vin E. Vermeer
UPH 사장

부록 A - 적용되는 병원 시설

UnityPoint Health Anamosa - St. Luke's/Jones 지역 의료센터
UnityPoint Health Cedar Rapids - St. Luke Methodist 병원
UnityPoint Health Des Moines - John Stoddard 암센터
UnityPoint Health Des Moines - Blank 아동병원
UnityPoint Health Des Moines – Grinnell 지역 의료센터
UnityPoint Health Des Moines - Iowa Lutheran 병원
UnityPoint Health Des Moines - Iowa Methodist 의료센터
UnityPoint Health Des Moines - Methodist West 병원
UnityPoint Health Dubuque - Finley 병원
UnityPoint Health Fort Dodge - Trinity 지역 의료센터
UnityPoint Health Keokuk – Keokuk Area 병원
UnityPoint Health Peoria – Illinois 의 Methodist 의료센터
UnityPoint Health Peoria – Pekin Memorial 병원
UnityPoint Health Peoria - Proctor 병원
UnityPoint Health Quad Cities/Muscatine - Trinity 의료센터 – Bettendorf
UnityPoint Health Quad Cities/Muscatine - Trinity 의료센터 – Moline
UnityPoint Health Quad Cities/Muscatine - Trinity 의료센터 - Rock Island
UnityPoint Health Quad Cities/Muscatine - Trinity Muscatine
UnityPoint Health Sioux City - St. Luke 지역 의료센터
UnityPoint Health Waterloo - Allen Memorial 병원
UnityPoint Health Waterloo – UnityPoint Health Marshalltown
UnityPoint Health Madison, Wisconsin - Meriter 병원 주식회사